

# 거창군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06 - 39 |
|----------|-----------|

발의연월일 2006년 7월 20 일  
발 의 자 이수정 의원 외 9 인

## 1. 제안이유

-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제명 “거창군의회포상규칙”을 “거창군의회 포상 규칙”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
- 포상절차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(안 제9조제2항)

## 3. 개정규칙안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## 거창군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포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의회포상규칙”을 “거창군의회 포상 규칙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.” 를 “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<br>행  | 개<br>정<br>안   |
|---|---|
| <p><u>거창군의회포상규칙</u></p> <p>제9조(포상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의회운영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.</p> | <p><u>거창군의회 포상규칙</u></p> <p>제3조(포상절차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<br/> <u>각 상임위원회</u> _____<br/>           _____</p> |